

제 605 호
1977.4.2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 례

○조 례
제 1164 호 :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 3

○규 칙
제 1699 호 : 서울특별시제무회규칙중 개정규칙 3

○훈 령
제 469 호 : 서울특별시보고통칙규정 11

○고 시
제 84 호 : 비포차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 34
제 116 호 :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35
제 12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35
제 12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지적승인 36
제 123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및지적승인 37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시	보도계장	공보계장	문화재담당	문화공보관	월	공 람
					일	

1600

제 124 호 : 도시계획 시설 (방수설비) 결정 및 지적 승인.....	37
제 125 호 : 도시계획 시설 (학교 , 도로 , 운동장) 신설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38
제 126 호 :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39
제 127 호 : 도시계획 사업 (광화문재개발구역) 시행자 지정 일부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39
제 128 호 : 도시계획 시설 (도로) 신설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지적 변경 승인).....	49
제 129 호 : 도시계획 시설 (도로) 신설 변경 폐지 결정 및 지적 승인.....	50
제 130 호 :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 (폐지) 및 지적 변경 승인.....	51
제 131 호 : 도시계획 시설 (공원) 결정 및 일부 변경 지적 승인...	52
제 132 호 : 도시계획 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 승인.....	52
㉠공 교	
제 90 호 : 도시계획 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53
제 93 호 : 서울특별시 중 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대체 지정 및 지정취소 공고.....	55
㉡사 령.....	5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27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164 호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목중 "재산세"를 "시세"로 한다.

제 1 조 중 "재산세" 다음에 "및 도시계획세"를 삽입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세율) ① 전조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 분의 1.5로 한다.

② 제 1 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237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 분의 1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재무회세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27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699 호

서울특별시재무회세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재무회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7 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 1. 2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계과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 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와 각종 시설공사(용역 제조포함)의 기성부분 검사시에는 입회불 생각할 수 있다.

제 118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무국장(이하 "총괄자"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한다.

제 118 조 제 2 항 "건항"을 "제 1 항"

제 4 항 "건항"을 "제 3 항"으로 한다.

제 118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 1. 본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 및 각사업소 재산은 그 주관국장

- 2. 구 및 출장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은 그 구 및 출장소장(동은 그 관할 구청장, 출장소장)

- 3. 시 관할 구역내의 시유임야는 녹지국장

- 4. 시 관할 구역외의 시유임야는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 5. 보통재산은 재무국장

제 118 조 제 4 항 "건항"을 "제 3 항"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 118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8 조의 2 (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자는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총괄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물 폐지 또는 변경할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관리자 또는 회계에 이관(이하 "관리관"이라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자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총괄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자를 지정한다.

④총괄자는 관리자가 용도물 폐지함으로서 잠중재산으로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총괄자는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등을 취득하여 관리한다.

⑥관리자는 재산의 취득변경 및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괄자에게 이불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가로 부터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제 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9 조, 제 120 조, 제 12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9 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이하 "분임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제 1항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 1항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관리자가 당해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20 조 (공무원의 책임) 관리자 분임 관리자는 그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21 조 (경계표) 시유지의 경계상 선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p>매설하여야 한다.</p> <p>제 123조 "전조 단항의"를 "제 122조 단서"로 한다.</p> <p>제 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124조 (시유재산의 소관 및 용도변경등) ①관리자가 그소관 시유재산의 관리환 및 용도의 변경이나 폐지불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총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또는 사유 3. 도 면 4. 기타 필요한 서류 <p>②관리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p> <p>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를 폐지한 재산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지체없이 이를 총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장의류분 또는 물건의 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도 면 <p>3. 관리또는 처분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p> <p>제 125조 제 1항의 "시장"을 "총괄자"로 한다.</p> <p>제 125조 제 2항의 "전항"을 "제 1항"으로하고 "금속"을 "건립"으로 한다.</p> <p>제 126조를 삭제한다.</p> <p>제 126조의 2 제 126조의 3 제 127조 제 128조 제 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126조의 2 (기부채납) ①명제 7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전입할 목적으로 기부불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사항을 갖춘 기부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기부조건 5. 가격 및 현황 6. 건축대지 증명 7. 등기부 등본
---	--

<p>8. 기타 필요한 서류</p> <p>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달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p> <p>제 126조의 3 (기부채납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산정기준) ①명제 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무상사용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제 1항의 무상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p>대부대상재산가액 × 대부요율 = 연간대부로 기부채납재산가액 ÷ 연간대부로 = 무상 사용 기간</p> <p>다만 연간대부로 산정에 있어서 기부채납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 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부대상재산가액으로 본다.</p> <p>제 127조 (등기절차) 시유재산을 취득 하였을 때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총괄자에게 등기 의뢰하여야 하며 총괄자는 법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p> <p>다만, 다음 각호에 의거 취득한 재</p>	<p>산은 주관부서에서 직접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후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 사업실시로 인한 취득 2.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취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재산 <p>제 128조 (재산취득) 재산의 취득을 필요로하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 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 승락서 6. 도 면 7. 공부대장증명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건축대지증명, 등기부등본) <p>8.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 129조 (신축등 보고) 시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해, 이축 또는 모양변경을 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 (참조 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p>
---	---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p>제 131조, 제 132조, 제 133조, 제 134조 제 134조의 2, 제 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131조 (소유권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소유권은 대금을 완납한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p> <p>제 132조 (교환) 명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후 그 재산을 관리할자가 다음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환상방물건의 표시 2. 교환상방 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 목적 및 사유 5. 교환 상방물건의 도면 6. 승 락 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p>제 133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p>	<p>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동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차액을 정산한뒤가 아니면 재산을 인도할 수 없다.</p> <p>제 134조 (재산가격결정 및 유효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유재산을 취득, 처분, 대부, 교환 및 기부채납을 하고자할 경우 그 가격은 명제 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액을 결정할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 1, 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격을 결정하되 재산의 노후,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재산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상회할수 없음이 명백할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근거서류 또는 복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 1,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할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냉정근거가되는 매매실례조서와 감정회사 감정서를
---	---

<p>첨부하여야 한다.</p> <p>(5)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액의 유효기간은 6 개월로 하며 유효기간의 경과후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 개월이 경과하면 재사정 2. 1 년이 경과하면 재감정 <p>다만 계속하여 대부하는 재산과 철거민정착지 및 기타 시장이 권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불 생략할 수 있다.</p> <p>제 134 조의 2 (대부요율) ①령제 6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은 다음각호와 같이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작목적의 농경지는 재산가액의 년 5 분이상 2. 조림, 목축, 광업, 채석등의 특역은 재산가액의 년 5 분이상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은 재산가액의 년 1 할이상 4.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직원후생 복지불 위한 시설의 사용료는 재산가액 년 5 분이상 5.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직접 	<p>사용할 재산은 재산가액의 년 5 분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사용허가 및 대부시는 재산가액의 년 5 분이상 7. 기타재산은 년 1 할이상 <p>(2)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과 대부기간은 따로 정할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반침에 의한 난민정착지 2. 주택개발제한지구내 토지 <p>제 135 조 (대부신청) 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유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 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건의 표시 2. 부근대부실례조서 (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차수인의 주소·성명 4. 차수목적 5. 대부기간 6. 도 면
---	--

<p>7. 공부상 필요한 증명 (토지, 가옥대장등본, 건축대지증명)</p> <p>8. 기타 필요한 사항</p> <p>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p> <p>제 13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135 조의 2 (대부조건) ① 시유재산의 대부는 영제 63 조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내 재산은 영제 63 조제 4 항제 1 호에 규정된 재산으로 본다.</p> <p>③ 일택지 (27 평) 미만의 공지가 인접한 건물부지와 합필하여 사용합이 토지회 효용도 높 증대시키는 경우는 그 토지를 영제 63 조제 4 항제 1 호에 규정된 건물있는 부지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1 택지 (27 평) 미만의 맹지도 또한 같다.</p> <p>제 136 조 (대부로납기) 시유재산의 대부로는 대부계약체결시 납부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대부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136 조의 2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 항,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 제 1 항 대금일 시납부기간은 2 개 월내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약조치할 수 있다.</p> <p>③ 제 1 항의 년부매각은 2 항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p> <p>④ 영제 69 조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구내의 재산매각은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 13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137 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자 및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대장 (제 74 호서식) 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p>제 138 조 제 1 항 「재부국장」 을 「총괄자」 로 한다.</p> <p>제 139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관리자는 소관 시유재산의 증감현황을 매 회계년도 증감보고서와 매 5 년마다 12 월 31 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3 월 31 일까지 총괄자를 거</p>
---	---

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0 조 (증감이동보고) 청·소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
 을 때에는 그 관리자는 증감이동
 보고서 (제 75 호서식) 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참조 제 두국장) 에
 게 당해월중 변동사항을 익월 10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1 조중 "재무국장" 과 "총괄
 자" 와 "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8289 호 : 76.12.9) 시행이전에 결정된 재산의 대부로 및 매각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보고통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7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준

◎서울특별시훈령제 469 호

서울특별시 보고
 통계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보고통계 규정 (대통령령 제 8358 호) 및 동시행규칙 (총리령 제 180 호) 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의 보고통계제도를 확립하여 보고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통계작성 및 이용체계를 일원화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모든 보고문서 및 통계분서는 보고통계규정 (이하 "령" 이라 한다) 및 동시행규칙과 통계법 및 동시행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

여 처리한다.

제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소속기관」은 서울특별시 (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과 구·출장소·사업소·경찰서 등 「제2차소속기관」은 등 파출소를 말한다.

2. 「통계」라 함은 보고 및 통계제출 작성할 때와 통계를 이용 발간하고자 할때 자체보고통계관의 사전승인을 거쳐서 시행함을 말한다.

제4 조 (자료수집계획의 교환 및 보고요구의 일원화) ①본청 및 제1차 소속기관의 각 실과장은 다음달에 수시보고에 의하여 수집할

월간 자료수집계획을 영제7조1항 별지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월 15일 까지 유관실과와 보고통계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다른 실과에서 송부된 월간자료 수집계획을 검토하여 당해과에서 보고받고자 하는 사항이 다른과의 월간자료 수집계획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보고받을 기관을 단일화 하여야 하며 보고받기로 결정된 실·과의 장은 보고받은 자료의 사본을 지체없이 당해자료를 보고받고자 한 다른 실·과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p>③기관내부의 동일사업에 대한 보고는 당초 보고 승인된 사업주관과에서 일괄 보고받아 주무국과의 자료요구시 보고받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동일내용을 각각 주무과에서 중복 보고하지 할 수 없다.</p> <p>제 5조 (자체보고 통제관) 본청의 보고통제관은 통제담당관이 되고 제 1차 소속기관의 보고통제관은 총무과장 (경무과장) 또는 서무과장 (계장) 이 되며 제 2차 소속기관의 보고통제관은 사무장, 파출소장이 된다.</p> <p>제 6조 (분임자체보고통제관) ①영 제 8조 제 4항 및 동시행규칙 제 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분임자체보고통제관을 둔다.</p> <p>②분임자체보고 통제관은 경무과장이 되며 그 직무는 제 9조에 개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p> <p>제 7조 (정기보고 지정심의회) ①영 제 10조 제 2항의 정기보고 지정신청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p>	<p>본청에 정기보고 지정 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심의회 의 위원장은 본청보고통제관이 되고 위원은 통제담당관, 통제기준계장, 시정개발담당관 개발 1계장, 시민과 문서통제계장, 행정과 행정지도계장, 경찰국 경무과 경무계장이 된다.</p> <p>③심의회는 매년 2월 15일내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p> <p>④심의회는 매년 정기보고 지정신청 또는 폐지 신청된 사안을 심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또는 폐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p>⑤심의회에서의 의안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제 8조 (정기보고의 지정) ①보고통제규정 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 별표 1에 명시된 정기보고 목록이외의 보고로서 본청 각과 및 제 1차 소속기관간 또는 제 1차와</p>
---	---

2 차 소속기관간에 정기보고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아래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정신청하여야 한다.

- 1. 동일사항에 대하여 연 3 회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보고
- 2. 매년 연보로 받아야 할 보고
- 3. 법령 및 규정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명시된 보고사항으로서 정기보고로 지정함이 타당한 보고
- 4. 기타 정기보고로 지정함이 타당한 보고

②서울특별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기보고 지정 심의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지정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케 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기보고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보고봉계규정 시행규칙 제7 조 제1 항 별표1에 명시된 정기보고

목록이외에 본청과 제1차소속기관에서 받는 정기보고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훈령으로 지정한다.

제9 조 (보고봉계관의 직무) ①보고봉계관은 기관장을 보조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

- 1. 자체보고봉계 문서의 보고체제 확립
- 2. 보고문서의 심사 봉계와 소속기관의 보고봉계 지도검열
- 3. 수시보고 및 즉수보고의 봉계
- 4. 행정 자료실의 지도감독
- 5. 소속기관의 봉계조사 활동의 봉계

제10 조 (수시보고의 봉계) ①본청 또는 제1차 소속기관에서 동급 또는 하급기관으로 부터 수시보고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득한후 영(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수보항목별 설명서를 작성보고 봉계관의 봉계를 받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②수시보고 통계문서는 기안문과 시행문 우측상단에 통계인을 주임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수보 항목별 설명서는 결재가 끝난직후 보고 통계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타기관에서 승인된 수시보고 문서를 동급 또는 하급기관에 이첩 보고 받고자 할 때에는 당초 승인된 분석본 첨부하되 수보 항목별 설명서를 작성보고 통계관의 확인을 받으므로 승인절차에 가름한다.

⑤전항의 경우에는 영제 11조 제 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11 조 (특수보고의 통계) 특수보고 통계시의 수보항목별 설명서 작성은 보고받을 내용이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 12 조 (전화보고) ①영제 13조에 의한 전화보고 사항은 수신다음에 승인번호를 명기하여야 하며 회신문서는 반드시 전화로 보고 하여

야 한다.

②보고통계관은 승인된 전화보고 목록을 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1회씩 목록을 작성 유관 실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통계보고) ①통제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통계보고는 다음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통계보고문서를 작성한 부서에서는 별지 1호 서식의 수보 카드에 보고 받은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 후 보고서 사본 1매를 첨부하여 행정자료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2. 보고통계관이 통계보고를 통제할 때에는 보고서 월안과 시행문에 별지 제 2호 서식의 경유인을 날인 함으로서 통계에 대신한다.

②전항의 승인된 통계보고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제 14 조 (행정자료실설치운영) ①영제

15 조 제 1 항에 의한 행정자료실은 본청과 제 1 차 소속기관에 각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본청의 행정자료실은 봉계담당관실과 경무과에 설치하며 제 1 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보고 봉계관이 소속된 실과에 설치 운영한다.

③본청 및 제 1 차 소속기관에서는 보고받은 모든 자료를 별지 제 1 호 서식의 수보카드에 기재하여 당해 행정 자료실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수보카드는 국과별로 분류하여 카드함에 보관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이규정 전조 제 1 항 1 호에 의한 통계보고의 수보카드도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⑥문서봉계관 및 각실과에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행정자료와 내부에서 발간한 간행물 1부씩을 행

정자료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보고봉계관은 제 3 항과 제 6 항의 자료를 제출치 않는 부서에 대하여 영 제 19 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독촉할 수 있다.

⑧각급기관의 보고봉계관은 매년 1 회씩 수집된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각실과 및 본청 보고봉계관에 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보고기일) ①영제 18 조 2 항

에 의한 정기보고와 통계 승인보고의 기관별 보고기일은 별표 1 과 같다.

②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다음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 1. 각급 기관내 상호간 5 일
- 2. 본청과 제 1 차 소속기관간 7 일
- 3. 1 차 소속기관과 2 차 소속기관간 5 일

제 16 조 (독촉장의 발부) ①보고봉계

규정 시행규칙 제 11 조제 2 항에 의

<p>한 당해보고문서의 주무과에서의 1차 독촉장 발부의되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한다.</p> <p>②전항의 독촉의뢰를 받은 통계관은 보고문서 독촉처리 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한후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제 17 조 (독촉장의 처리) 독촉장을 접수한 보고통계관은 별지제 4 호 서식의 독촉장 처리인을 수신기관 보관상 부단에 찍어 독촉처리 대장에 관계사항을 기록한후 당해보고문서 처리주무과에 이송하고 처리 주무과에서는 주무과장의 결재를 득한후 독촉장 회신분에 보고예정기일을 명시 보고통계관의 확인을 받아 회신문을 절취하여 발</p>	<p>송기관외 보고통계관에게 즉시 송부 하여야 한다.</p> <p>제 18 조 (무기일 보고) 사업완료시기의 예측 불능으로 보고기일을 확정할수 없는 보고요구문서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없다.</p> <p>제 19 조 (문서통계관의 임무) 본서 통계관은 영계 9 조에 의한 보고문서와 통계보고문서의 수발은 반드시 보고통계관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보고통계관이 행한 보고통계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p>																								
<p>(별지 제 1 호서식) <u>수 보 카 - 드</u> 작성기준일 : 1977. . . 현재</p>																									
<p>제 목 : 작성자: (인)</p>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50px;">구분</td> <td>구분</td> </tr> <tr> <td>모든사업명</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총 계</td> <td></td> </tr> </table>	구분	구분	모든사업명								총 계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50px;">구분</td> <td>구분</td> </tr> <tr> <td>모든사업명</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총 계</td> <td></td> </tr> </table>	구분	구분	모든사업명								총 계	
구분	구분																								
모든사업명																									
총 계																									
구분	구분																								
모든사업명																									
총 계																									
<p>*본 카-드는 수보와 동시 간략하게 작성하여 행정자료실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p>																									

(별표 1)			
보고주기	기 관 별 제 출 기 일		
	본청에서중앙보고	1차소속 기관에서 본청보고	2차소속 기관에서 1차소속기관보고
속 보	2일 이내	1일 이내	즉 시
일 보	3일 이내	2일 이내	1일 이내
주 보	주말토 부터 3일 이내	이주 화요일	외주 월요일
순 보	순기 말로 부터 4일 이내	익순초 3일내	익순초 2일내
반 월 보	반월 기말 5일 이내	반월기말 3일내	반월기말 2일 이내
월 보	월 말로 부터 10일 이내	익월 5일내	익월 3일내
기 보	분기 말로 부터 15일 이내	익분 기초 10일 이내	익분 기초 5일내
반 년 보	반년기 말로 부터 20일 이내	반년기 말로 부터 15일 이내	반년기 말로 부터 10일 이내
연 보	연 말로 부터 1월 이내	연 말로 부터 20일 이내	연 말로 부터 15일 이내

1. 지정통계 목록						
소 관 별	통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성 주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경 유기 관	2 차경 유기 관
경 제 기 획 원	인구센서스	1	5 년			
	주택센서스	2	5			
	인구동태조사	3	월 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4	분기별			
	광고업센서스	6	5 년			
	가계조사	10	월 별			
	전국 소매 물가 조사	13	분 별			
	도 소매업 센서스	14	3 년			
	광고업 통계조사	17	년 별			
	국부 통계조사	21	10 년			
	광고업 동태조사	23	월 별			
	재고 통계 조사	26	월 별			
	건설업 통계조사	27	월 별			
	건설업수주 통계	29	월 별			
농수산부	농업센서스	5	10 년			
	농가 경제 조사	8	월 별			
	농산물 생산비 조사	9	연 별			
	식량작물 생산량 조사	15	연 별			

2. 일반통계목록							
가. 정부기관							
소 관 별	통 계 명 칭	승 인 번호	작성 주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 경유기 관	2 차 경유 관	
경 제 기 획 원	주요행정통계조사	60	월 별				
	도소매업동태조사	121	월 별				
	통계활동현황조사	144	연 별				
	인구이동조사	341	월 별				
	신규등록사업체보고	474	월 별				
	원 호 처	퇴직급여대상자 통계보고서	398	월 별			
		원호대상자월별 통계보고	399	월 별			
		상이자상이처별 통계	400	연 별			
		취업자통계보고	401	월 별			
	내 무 부	취학자 통계보고	402	연 별			
기업체 실태조사		462	연 별				
지역별경제활동 인구조사		123	분기별	시 도			
한국도시 연간자료 조사		342	연 별				
고물상, 전당포, 흥신업실태 및 단속상황		431	분기별	경찰서			
인장업실태 및 단속상황		432	분기별	경찰서			
저방세 징수상황		433	월 별	동			
불찬자 배출 현황		434	월 별	경찰서			
벌중교통좌고 발생현황		425	연 별	경찰서			
화재발생 종괄표		436	월 별	경찰서			
새마을 소득조사	437	연 별	시 도				

소관별	통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성 주기	최초작성 기관	1차 경유기관	2차 경유기관	
법무부	외국인입국자통계보고	252	월 별				
	외국인출국자통계보고	253	"				
	내국인출국자별말통계보고	254	"				
	합입합항공기및승무원통계보고	255	"				
	제외국인출입국자통계	256	"				
	합입합선박및선원통계보고(항구별)	257	"				
	합입합선박및선원통계보고(국적별)	258	"				
	계소자통계	384	월별주별				
	제원생통계	385	"				
	소년학생범죄사건표	386	월 별				
	입국자격부여및입국허가통계	475	"				
	선원출국자통계	476	"				
	상륙허가통계	477	"				
	저류신고자통계	478	"				
	인권침해사건통계	479	분기별				
	체류외국인국적별자격별통계	480	연 별				
	문교부	교육기관통계조사	33	연 별			
		각급학교실태조사	55	"			
		초중등교원수급상황보고	226	"			
청소년직업학교운영실태보고		227	반년별				
학생기생충검사현황		228	반년별				
학생및교원신체검사통계보고		230	연 별				

소관별	문 제 명 칭	승인 번호	작성 주 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 경유기관	2 차 경유기관
농수산부	농업기제보 유현황	288	연 별	동	구출장소	
	미강생산배정및착유실적보고	289	연 별	구		
	농지전용상황 보고	290	분기별	동	구출장소	
	경지이용실적보고	291	반년별	"		
	농약공급상황보고	292	연 별	구		
	퇴비생산보고	293	분기별	동	구출장소	
	농작물피해보고	294	연 별	"	"	
	축비생산보고	295	연 별	"	"	
	잡곡두류실수확량조사	296	연 2 회	"	"	
	맥류파종면적조사	297	주 별	"	"	
	맥류종 중별면적조사	298	월 별	"	"	
	콩 발신태조사	299	연 별	구		
	상묘생산비조사보고	300	연 별	잡업 검자소		
	춘하추기잡전생산및공판상황보고	302	반년별	동	구출장소	
	춘추기양잠규모조사보고	303	반 별	동	"	
	춘추기소잠실적보고	304	반 별	동	"	
	원잠중및보통잠중생산실적	305	연 별	시 도		
	잡전생산비조사	306	연 별	잡업 검자소		
	생사제조판메비조사	307	연 별	시 도		
	제사봉계 정보	309	월 별	사업체		
누에사육 보고	310	반년별	동	구출장소		
과실수확고보고	311	반년별	동	"		
원에 작물가공현황조사보고	312	연 별	동	"		

소관별	종 제 명 칭	승 인	자 성	최초작성	1 차	2 차
		번호	주 기	기 관	경유기관	경유기관
	김장제소예상실수확량조사보고	313	반년별	동	구출장소	
	제소예상실수확량실적	314	반년별	동	"	
	축성제배시설현황및생산실적	315	연 별	동	"	
	특유작물및약용작물예상(실)수확량조사	316	반년별	동	"	
	유채파종실적보고	318	연 별			
	인초생산및수매실적보고	320	연 별	동	구출장소	
	양송이생산보고	321	반년별	구		
	저마식부실적보고	322	연 별	구		
	축산물처리가공실적보고	323	분기별	시 도		
	낙농목장실태파악	324	연 별	구		
	축산사료생산실적보고	325	별 별	시		
	동원약품생산판매상황보고	328	별 별	구		
	도축검사보고	329	별 별	구		
	유제품생산소비상황및자격	330	월 별	구		
	곡가보고	331	월 별	구		
	양곡제고현황	332	주 별	구		
	양잠경영실태조사	340	반년별	구		
	양양이룡조립생산실적보고	416	연 별	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보고	497	반년별	시.도		
	병창해발생상황보고(수도맥류)	498	5 일별			
	병창해박제실적보고(수도맥류)	499	순 별	동	구출장소	
	농약제고조사	500	연 별	동	"	

소관별	통 계 명 칭	승 인 번호	작성 주기	최초작성 기 관	1차 검 용	2차 검 용
상공부	보통잡종생산비조사	501	반년별	도.감.총.강		
	양곡소비량조사	502	월 별			
	중소기업실태조사	104	연 별			
	기계공업체실태보고서	148	월 별			
	중소기업가동상황보고	272	분기별	구		
	광산불생산량조사	273	월 별	시.도		
	민수용탄및연탄수급상황보고	275	월 별	"		
	광산재해통계	449	월 별	구.시		
	조선사업종합보고	450	반년별	시.도		
	가동새마을공장외분영실적보고	451	월 별	구.시		
	중소제조업수출실적보고	452	월 별	"		
	염허가상황보고	453	분기별	시.도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입주기업	494	월 별		
관리청	제현황보고					
건설부	하수도통계	281	연 별	구.시		
	상수도통계	282	연 별			
	전국주택현황보고	283	연 별			
	건설통계	284	연 별			
	전국주택건설현황보고	285	연 별			
	건설통계(교통량자료조사)	286	연 별	구.시		
	건축허가통계	336	월 별	"		
	도로 및 교량현황	378	연 별	"		

소 관 별	종 계 명 칭	승 인 번 호	작 성 주 기	최 초 작 성 기 관	1 차 경 유 기 관	2 차 경 유 기 관
보건사회부	수문조사연보	397	연 별		/	
	주거실태조사 (유주택)	418	연 별			
	중기 등록현황	438	월 별	시 . 도		
	중기 조종사면허현황	439	분기별	"		
	중기 소재지 변동 신고현황	440	분기별	"		
	무허가건축물현황	473	분기별	구 . 시		
	국립공원관리현황	481		구 . 시 국립공원		
	주택 및 택지현황	495	연 별	구 . 시		
	생활실태조사	105	연 별			
	국민신체편차조사	124	연 별			
	질병상해통계조사	125	연 별			
	국민영양조사	147	연 별			
	모자보건실태조사	169	연 별			
	가정의례실천에 대한 의식구조조사	172	연 별			
	미락아 가정 환경 실태조사	173	연 별			
	법정잔여 병환자현보	205	월 별	구 . 시		
	방역약 출생 산 및 저출상황표	206	월 별			
	나환자 등록 상황표	207	월 별			
	가각계 획 사업 실적	208	월 별	구 . 시		
	이 . 미용사 연중면허상황	212	연 별	"		
보건사회부	병원 및 혈액원 상황보고	214	분기별	시 . 도		
	개업제출 및 허가등록된 의료기관 분포 상황	215	연 별	구 . 시		

소 관 별	종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 성 주 기 기	최초작성 관	1 차 경유기관	2 차 경유기관
	자호요원 현황	216	불기별	구.시		
	의약품영업자연알현재분포상위	217	연 별	구.시		
	의약품등생산실적보고	218	월 별	"		
	미망인실태보고	222	"	동	구출장소	
	부녀아동보호시설현황	468	불기별	구.시		
	식품환경관계실태현황	469	"	구.시		
	생활보호실적	470	"	동	구출장소	
	사회복지시설수용자동태	471	"	구.시		
	기 미아및 부랑아 취급실적	472	"	"		
	결핵관리사업실적	482	월 별	"		
	만성병 사업실적	483	불기별	"		
	모자보건사업실적	484	"	"		
	요구호대상자구호실적	485	"	"		
	보건의료장비기재보고	486	"	"		
	가정외래순회상황보고	487	"	"		
	생활보호대상자명부작성	505	연. 일			
교 통부	자동차운수실적보고	731	월 별	시.도		
	주요물자수송실적보고	232	"	"		
	자동차면허등록상황	233	"	"		
	관광객이동상황 보고	235	"	구.시		
	별간민간항공영업	244	"			
	통 계					
	별간 민간항공 운항	245	월 별			
	통 계					

소관별	동 제 명 칭	승인 번호	작성 주기	최초작성 기관	1차 경유기관	2차 경유기관
	해난사고현황	387	월 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외국인 관광객 이용 인원 및 의화회독보고	388	반년별	시.도		
	호텔이용객동태보고	389	월 별	시.도		
	고속버스수송실적보고	390	〃			
	항공부문의화수입실적	391	〃			
	창고업 허가상황보고	427	〃	기.도		
	노후차개체실적보고	428	〃	〃		
	자동차정류장허가상황보고	429	〃	〃		
	차량별보유현황	430	연 별	〃		
재신부	국제우편물나라별이용물 수및 우편낭취급통계	203	월 별			
	우편물통계	204	월 별			
	우체국구내지황조사	454	연 별			
	전화업무실적보고	455	월 별			
	시내가입전화수요조사보고	456	연2회			
	시내통화량조사보고	457	〃			
	공중전화수요조사보고	458	연 별			
	전선업무실적보고	459	월 별			
	무선업무실적보고	460	분기별			
	공중전화관리상황보고	461	월 별			

소관별	종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성 수기	최초작성 기	1 차 관유기관	2 차 관유기관
문화 공보부	출판사 인쇄등록 및 등록변경 상황보고	441	월 별	구, 시		
	스크린쿼타제 이행 보고	442	분기별	동	구, 출장소	
	유선방송허가 폐업변경 상황보고	443	연 별	구, 시		
	지정및 사찰문과제 관람료 징수 상황보고	444	"	"		
조달청	발품증감및 천재액 양제산	463	"			
	정기재물조사 보고	464	"	구, 시 사업소		
산림청	산림기본조사	179	연 별	동	구, 출장소	
	표고 개배사업 생산 실적보고	180	월 별	"	"	
	포부라 기계제품의 수출및 생산 실적보고	181	분기별	"	"	
	계재공장 및 생산실적보고	182	연 별	"	"	
	수묘생산실적보고	183	"	"	"	
	임산연로수급실보고	184	월별	"	"	
	임목벌채허가 및 목재공급 상황 보고	185	월 별	"	"	
	임산액조사	339	연 별	"	"	
	관상수 시업 상황조사	380	"	"	"	
	산림피해 및 부정임산물 단속 상황보고	488	월별및 수별	"	"	
	양묘사업 실적보고	489	연2회	양 묘 사업소		

소관별	통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성 주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 경유기관	2 차 경유기관
산림청	사방사업보고서	490	연2회	사방사업소		
	국유림인공조림지활착상황보고	491	연 별			
	민유림조림활착상황보고	493	"	구, 시		
	민유림조림실적보고	492	연2회	구, 시		
전매청	일담배 생산예정량 및 수납대금 조사	187	월 별			
	물가임금조사	188	분기별			
	일담배 작황조사	190	월 별			
	담배생산실적	191	"			
	일담배 생산비조사	189	연 별			
	인삼경작일람표	192	월 별			
	인삼수납	193	일 별			
	홍삼제조	194	월 별			
	홍삼계품제조	195	"			
	홍삼및 홍삼계품원화판매실적보고	403	"			
	담배출납상황보고	404	"			
	년도연초경각허가실적보고	405	연 별			
	일담배 재건조작업실적보고	406	월 별			
	일담배 수납실적보고	407	간년월			
	소매인 변동상황 및 예도액현황	408	월 별			
	담배소비실적조사보고	417	적년별			

소관별	통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성 주 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 경유기관	2 차 경유기관	
관세청	지역별 담배판매상황	465	연 별				
	연초식부경시 실적보고	466	"				
국세청	상품식가조사표	280	월 별				
	세입징수총보고서	467	"				
관세청	선박입출항농제표	276	월 별				
	수출입화물 반출입 및 계획량보고서	276	"				
	무역통계	352	"				
농촌 진흥청	농산물가격추세 홍보실 시상황보고	196	반년별				
	농가경제부기장 상황보고	197	"				
수산청	어업경영조사	130	분기별				
	선어유동조사	131	월 별				
	수산물 가격조사	132	일 별				
	수산제조업 생산고조사	141	월 별				
	어가경제조사	156	분기별				
	규제대 상어업 어획량보고	198	월 별	시,도			
	수산자재 생산실적보고	199	분기별	"			
	해태 생산및 작황조사보고	200	월 별				
	해태진흥실적보고	201	연1회				
	월별총보별 배강어 제보실적보고	202	월 별	구,시			
		수산물위탁판매고조사	345	"			

소관별	동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성 주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 경유기관	2 차 경유기관
특허청	공업소유권통제	383	월 별			
노동청	노동생산성조사	139	연 별			
	노동력유동실태조사	140	반년별			
	휴폐업 사업체 실태	142	연 별			
	임금실태조사	158	"			
	구인, 구직 취업현황조사보고	262	분기별			
	근로자공급상황	270	"			
	구인, 구직 취업현황	271	월 별			
	고상전망조사	348	반년별			
철도청	화물일보	266	일 별			
	철도보선통계	268	연 별			
	동력차별운전실적	395	월 별			
	운수성적일(월)보	424	일별, 월별			
	여객사고통계	425	월 별			
	화물사고통계	426	"			
항만청	정기여객선 운항실적보고	236	월 별			
	명령항로 운항실적보고	237	"			
	화물수송 실적보고	238	"			
	선박실적보고	239	분기별			
	항만수입실적보고	240	월 별			
	외화수입보고	242	"			
	등록선박통계 보고	243	"			

소관별	용 계 명 칭	승인 주 기	작성 주 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 관	2 차 관
함안청	선원수첩 위급보고	392	월 별			
	해기 사면허 발급봉제	393	·			
	해외취업선원 현황보고	445	·			
	국제여객 (해리호) 수송실적	446	주 별			
	콘테이너 수송실적	447	월 별			
	주요항만시설 및 능력현황	448	연 별			
대검찰청	범죄분석순제	379	분기별			
서울시	서울시 인구동태표본조사	44	연 별	시		
	경제활동인구조사	136	분기별	·		
	주야간인구조사	146	연 별	·		
	인구이동조사	419	·	·		
부산시	부산시 가계조사	149	분기별			
	승계교통량조사	154	연 별			
	차량교통량조사	420	·			
강원도	강원도 도시가계조사	337	분기별			
충청북도	충북 도시가계조사	129	·			
경상북도	가 계 조 사	120	분기별			
	새마을소득조사	496	연 별			
인천시	경제활동인구조사	150	분기별			
목포시		151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4 호

비로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

비로단속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외. 규정에 외거 비로 제조 영업허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7.3.28

서울특별시

허가 번호	허가 또는 변경년월일	생산업자의 주소 성명 및 제조공장소재지	비로의명칭	보증성분량	비 고
1-1	77.3.28	(구) 1. 주소, 성명 서울종로 삼청동 25-132 아 휴 2. 제조공장소재지 및 명칭 서울도봉구 방학동 7 서울미원주식회사	아미노산발효 부산비로(박)	질소전량: 4% 가리전량: 2.5%	염분농도 10%이하
		(신) 1. 주소, 성명 서울영등포구 신길동 205 김 병 기 2. 제조공장소재지 및 명칭: 서울 도봉구 방학동 7 서울미원주식회사	아미노산부산물 비로(박)	질소전량: 10%	

조건 1. 유효기간: 1977.3.28 - 1979.3.28

2. 본 허가는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허가권을 양도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6 호

도로 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고시

도로 교통법 제 44 조 제 7 호에 의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7.4.20

서울특별시 장

1.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택시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합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택시,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규정된 요금(메타기에 의한 요금) 이외의 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의 운전자는 허가 없이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57 조 제 58 조의 유상 운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62.12.8)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농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p>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p> <p>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7.4.25</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의위치 : 종로구 신문로 2가 6의 4 - 홍파동 36의 1</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고려병원 - 독립문간, 도로확장 공사</p> <p>3. 사업의 규모 : [폭 = 12 m 연장 = 580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착수및준공예정일 : 1977.2.1 ~ 1977.6.30</p>	<p>4. 사용또는수용할 재산의소재지 : 별첨</p> <p>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토지조소생략</p> <hr style="width: 20%; margin: 10px auto;"/>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얏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토지 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4.2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도로 결정 및 자취상환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점	중점	비고
신설	소로	3		6 m	195 ^m	용답동 37	용답동 28-1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3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 법제 13 조와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

여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4.27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결정(운동장)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운동장	성북구 중암동 산 2 의 27 의 4 필지	111,600.5㎡ (33,759 평)	체력단련장

* 별첨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4 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결정 및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 3.16) 의 권한 위임에 의거 인안

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1977.4.27

서울특별시장

나. 방수설비 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규 모	연 장	지 점	중 점 비고
신설	방수설비	B=10m	L=250m	실도읍 덕은리 중 1-138	실도읍 덕은리 산 434-2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은(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5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운동장)
신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운동장) 을 다음과 같이 신설,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같은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 ('77.3.16)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니다.

1977.4.27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학 교 (영광여자상업고등학교)	도봉구 월계동 824 의 4 의 17 필	29,190 (8,830명)	
"	학 교 (중, 고등학교)	강남구 가락동 112 의 2 의 23 필	39,884 (12,065명)	
"	학 교 (흥익중, 고등학교)	성북구 성북동 151 의 13 필	35,551 (10,754명)	기존 학교

나. 도로변경 (폐지)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m	175m	월계동산 59	월계동산 46	영광여자상업 고등학교용지내 도로폐지
변경	"	"		"	"	"	"	

다. 운동장변경 (폐지)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운동장	도봉구 월계동 824 의 4 의 11 필	18,500 (5,596 명)	
변 경	"	"	18,500 (5,596 명)	폐 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은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및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의 권한 위임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4.27
 서울특별시 장

○ 도로 변경 및 지적 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번호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소로	1		8m	110m	서소문동 120-25	남대문로 4가 147-1	남대문구교 부근 노선 연장
변경	"	"	"	"	160	"	태평로 2가 127-1	
기정	"	3		6	50	능변동 146-7	능변동 146-12	노선 연장 위치 변경
변경	"	"	"	"	90	" 144-65	" 146-12	
기정	"	4		4	20	공덕동 7-118	공덕동 7-12	위치 변경
변경	"	"	"	"	"	"	"	
기정	"	3		6	80	길운동 489-50	길운동 24-2	특원 축소
변경	"	4		4	"	"	"	
기정	"	4		4	37	용두동 236-40	용두동 236-43	지정계 건축
변경	"	"	"	"	"	"	"	

○ 별첨 도면표시와같은(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7 호
 도시계획사업(광화문재개발구역) 시행자 지정일부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6 호 (75.11.18)로 시행자 지정 승인한 광화문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 24, 25, 26 및 건설부

<p>고시 제 41 호 (76.3.16)에 의거 시행자 지정일부 변경하는 동시조건을 부하여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7.4.27</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p> <p>1. 사업명 : 도시계획 (광화문 구역) 재개발사업</p> <p>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49 및 세종로 1가 138-1번지일대 (지번생략)</p> <p>3. 시행면적 : 8,983 평 방미터 (2,719.1평)</p> <p>4. 시행자 : 중구 회현동 3가 11-3 당 초 :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동 준 종로구 종로 1가 138-1 코리아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찬 영 변 경 : 중구 회현동 3가 11-3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동 준</p>	<p>5. 시행기간 : 76.3 (인가일) - 78.12.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외의 권리명세</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p> <p>8. 조 건</p> <p>가) 시행자 이외의 토지 및 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처분 조건으로 인가</p> <p>나. 토지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시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수용</p> <p>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광화문 재개발사업 가격평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액을 기준</p> <p>9.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및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에서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의 동람에 공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도서생략)</p>
---	--

별표 1 가. 보					
보지소제지	본		기타권리	기타권리내역	
	명 및 주소				
세종로	회현동3가11외3				
	.				
	.				
	.				
	.				
	.				
	.				
	.				
	.				
	.				
	.				
	.				
기	금곡동	29	근저당	국민은행	23,000,000
가	세종로	130	근저당	산업은행	15,000,000
	.		.	.	
가	세종로	126	근저당	국민은행	13,000,000
가	세종		.	제일은행	202,000,000

별표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전항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가. 토 지

토지소재지	토 지 대 장				동 기 부 동 본				기타권리	기 타 권 리 내 역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성 명 및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성 명 및 주 소		
세 종 토	149	대	828.3 882.4	대한교육보험 중구 회원동 3가 11-3	149	대	828.3 (882.4)	대한교육보험 중구 회원동 3가 11의3		
	147-1	"	8	"	147-1	"	8	"		
	147	"	115	"	147	"	115	"		
	137	"	16	"	137	"	16	"		
	136	"	38	"	136	"	38	"		
	133-1	"	100	"	133-1	"	100	"		
	132	"	161	"	132	"	161	"		
	134-1	"	34	"	134-1	"	34	"		
	135	"	36	"	135	"	36	"		
	125	"	112	"	125	"	112	"		
	123-2	"	20	"	123-2	"	20	"		
	123-1	"	72	"	123-1	"	72	"		
	122	"	18	"	122	"	18	"		
	121-1	"	25	"	121-1	"	25	"		
	121-2	"	34	"	121-2	"	34	"		
	120	"	37	"	120	"	37	"		
	119	"	15.6	"	119	"	15.6	"		
	119	"	53 (23)	"	119	"	53 (23)	"		
	116	"	0.4 (34)	"	116	"	0.4 (34)	"		
	117	"	72.9(75)	"	117	"	72.9(75)	"		
	128	"	35.1(45)	"	128	"	35.1(45)	"		
	127	"	31	"	127	"	31	"		
	124	"	20	"	124	"	20	"		
	129	"	(9.4) (43)	김수영 인천시 금곡동 29	129	"	9.4(43)	김수영 인천시 금곡동 29	근저당	국민은행 23,000,000
	130	"	30	최성우 중로구 당주당 95-12호	130	"	30	최성우 중로구 세송로 130	근저당	상업은행 15,000,000
	121	"	13	"	121	"	13	"	가등기	"
	126	"	66	김덕선 중로구 세송로	126	"	66	김덕선 중로구 세송로 126	근저당	국민은행 13,000,000
	138-1	"	102.1	성찬영 중로구 세송로 138-1	138-1	"	102.1	성찬영 중로구 세송	"	제일은행 232,000,000

보 지 대 상				등 기 부 등 본							기 타 권 리 내 역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성 명 및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성 명 및 주 소		기 타 권 리
세 종 로	138 - 3	대	50.6	성 찬 영	종로구 세종로 138-1	138 - 3	대	50.6	성 찬 영	종로구 세종로 138-1		
종로 1가	12 - 1	"	33	"	"	12 - 1	"	33	"	"	근저당	제일은행 202,000,000
"	12 - 2	"	30	"	"	12 - 2	"	30	"	"		
"	12 - 3	"	34	"	"	12 - 3	"	34	"	"		
세 종 로	138 - 2	"	25.3	장 재 근	마포구 농교동 201-16	138 - 2	"	25.3	장 재 근	종로구 관철동 18-8	근저당	신락은행 8,000,000
종로 1가	16	"	53	"	"	16	"	53	"	"		
"	9	"	24	안 평 순	종로구 종로 1가 9	9	"	24	안 평 순	종로구 종로 1가 9		
"	10 - 1	"	34	박 윤 규	종로 1가 10번지	10 - 1	"	34	박 윤 규	종로 1가 10		
"	10 - 2	"	20	김 형 자	서대문구 북아현동 1-245	10 - 2	"	20	김 형 자	서대문구 북아현동 1-245		
"	"	"	10	박 윤 규	종로 1가 10	11	"	10	박 윤 규	종로 1가 10		
"	15	"	3.6	김 순 열	종로구 종로 1가 15	15	"	3.6	김 순 열	종로구 종로 1가 15	근저당 가등기	조흥은행 입농우 8,000,000
"	1 - 1	"	6.1	차 태 식	성북구 종암동 10-140	1 - 1	"	6.1	차 태 식	성북구 종암동 10-140		
"	6 - 1	"	4.4	이 영 호	종로구 종로 1가 6	6 - 1	"	4.4	이 영 호	종로구 종로 1가 6		
"	7 - 1	"	1.9	이 말 녀	" 종로 1가 7-1	7 - 1	"	7.1	이 말 녀	" 종로 1가 7-1		
"	8 - 2	"	2.1	장 옥 삼	" 종로 1가 8-2	8 - 2	"	2.1	장 옥 삼	" 종로 1가 8-2		
"	8	"	1.7	국 유		8	"	1.7	국 유			
"	13	"	1.2	박 근 배	종로구 창천동 267	13	"	1.2	박 근 배	종로구 창천동 267		
"	9 - 2	"	43.3	서 울 시		9 - 2	도로	43.3	서 울 시			
"	14 - 3	"	"	"		14 - 3	"	"	"			
세 종 로	108 - 1	"	89.3	"		108 - 1	"	89.3	"			
"	129 - 1	"	37.3	"		129 - 1	"	37.3	"			
"	131 - 1	"	4.7	"		131 - 1	"	4.7	"			
종로 1가	2	"	26	박 용 태	종로구 종로 1가 3	2	대	26	박 용 태	종로구 종로 1가 3		
"	3	"	108	"	"	3	"	108	"	"		
"	3 - 1	"	2.6	"	"	3 - 1	"	2.6	"	"		
합 계			2,719.1					2,719.1				

나. 건 물

가 목 대 장						등 기 부 등 본							
건물소재	지번	구 조	용도	면적	소유자성명및구조	지번	구 조	용도	면적	소유자성명및구조	기타 관리	기 타 관 리 내 역	현 황
세종로	126	목조와 증	주 택	25	강덕선 종로구세종로 126	126	목 조 와 증	주 택	25	김덕선 종로구세종로 126	근저당	국민은행 13,500,000	공 부 와 동 일
	129	철근콘크리트조	주 택 점		김수영 인천시금곡동 29	129	철근콘크리트조	점 주 택		김수영 인천시금곡동 29	"	" 23,000,000	"
		1 층		38.44			1 층		38.44				"
		2 "		40.62			2 "		40.62				"
		3 "		40.62			3 "		40.62				"
		4 "		29.19			4 "		29.19				"
		5 "		29.19			5 "		29.19				"
		6 "		29.19			6 "		29.19				"
		지 하		38.44			지 하		38.44				"
	옥 탑		3.53			옥 탑		3.53				"	
		소 계		249.22		소 계		249.22					
세종로	130	세멘트벽돌조	영업소		최성우 세종로 130	130	세멘트벽돌조	영업소		최성우 세종로 130	근저당 가등기	산업은행 16,000,000	철근콘크리트조
	131	세멘트부목조				131	세멘트부목조						
		1 층		30.99		동남자상	1 층		30.99				37.71 평
		2 "		30.99			2 "		30.09				36.71 "
		3 "		31			3 "		31				36.71 "
		지 하		5			지 하		5				공 부 와 동 일
	소 계		97.98			소 계		97.98					
					138-1 12-1	철근콘크리트조 (12층)	영업소		심찬영 종로구세종로 138	근저당	제일은행 202,000,000	공 부 와 동 일, 가옥대장 업은 미등기	
					동남자상	1 층		115				"	
						2 "		115				"	
						3 "		120				"	

가 목 대 장						동 기 부						등 본		
건물소재	지번	구 조	용 도	면 적	소유자성명및주소	지번	구 조	용 도	면 적	소유자성명및주소	기 타 권 리	기 타 권 리 내 역	비	참
							4 층		120	성찬영	종로구새종로 138-1			공부의동일,가옥대장은미등
							5 "		120					" "
							6 "		120					" "
							7 "		120					" "
							8 "		120					" "
							9 "		120					" "
							10 "		120					" "
							11 "		120					" "
							12 "		120					" "
							우 탐		20					" "
							지 하 1 층		85					" "
							지 하 2 층		95					" "
							소 계		1,630					" "
종로 1 가	12-2	목 조 와 즐	주 택	16	성찬영 새종로 138-1	12-1	목 조 와 즐	주 택	16	성찬영				" "
		연 와 조					연 와 조							" "
	12-3	목 조 와 즐	"	22	" "	12-3	목 조 와 즐	"	22	" "				" "
비 종 로	138-3	"	"	21.95	" "	138-3	"	영업소	21.95	" "				" "
	138-2	목 조 스투 트	영업소	24.98	장재근 종로구관철동 18-8	138-2	목 조 스투 트	"	4.92 24.98	장재근 종로구관철동 18-8	근저당	한국신락은행 8,000,000		" "
종로 1 가	16	목 조 와 즐	"	32.05	" "	16	목 조 와 즐	"	32.05	" "				" "
	"	"	"	5.38	" "		"	"	5.38	" "				" "
	9	"	주 택	14.43	안병순 종로구종로 1 가 9	9	"	주 택	14.43	안병순 종로구종로 1 가 9				" "
	10-1	"	"	29.2	박윤규 종로구종로 1 가 10		"	"	29.2	박윤규 종로구종로 1 가 10				" "
	11	"	"				"	"						" "
	동안지상													11번지상에미등기 건물 23.29평 있음

가 목 대 장						종 기 부 등 분										
건물소재지번	구 조	용도	면 적	소유자성명및주소		지번	구 조	용도	면 적	소유자성명및주소	기 타 권 리	기 타 권 리 내 역	현 황			
중로1가	2	철근콘크리트	•	박용래	중로구중로1가3	2	철근콘크리트	병 원		박용래	중로구중로1가3		지상 9 층, 지하 1 층 건물			
	3	세멘트연와조					세멘트연와조									
		(5 개 층)														
	3-1	1 층					125.8							1 층	125.8	공부와 동일
	동일지상	중간 2 층					26.5							중간 2 층	56.5	125.8 평
		3 층					125.8							3 층	125.8	공부와 동일
		4 "					125.8							4 "	125.8	
		5 "					125.8							5 "	22.55	125.8 평
		6 "					125.8							지하 1 층	115.34	6층-9층까지 125.8평인
		지하 1 층					115.34							소 계	571.79	연건적치 1,247.54 평
소 계		770.84														

별표2.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가. 토 지

토 지 대 장					등 기 부 등 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및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및 주소		기타권리	기 타 권 리 내 역		
종로	129	대	9.5 (43)	김수영	인천시금곡동 29번지	129	대	9.6 (43)	김수영	인천시금곡동 29번지	근저당	국민은행	23,000,000
	130	"	30	최성우	종로구당주동 95-12호	130	"	30	최성우	종로구세종로 130번지	근저당 가등기	상업은행(표성순)	16,000,000
	131	"	13	"	"	131	"	13	"	"	"	"	
	126	"	66	김덕선	종로구세종로	126	"	66	김덕선	종로구세종로 126번지	근저당	국민은행	13,000,000
	138-1	"	102.1	성찬영	종로구세종로 138-1	138-1	"	102.1	성찬영	종로구세종로	"	제일은행	202,000,000
	138-3	"	50.6	"	"	138-3	"	50.6	"	종로구세종로 138-1번지			
종로1가	12-1	"	33	"	"	12-1	"	33	"	"	근저당	제일은행	202,000,000
	12-2	"	30	"	"	12-2	"	30	"	"			
	12-3	"	34	"	"	12-3	"	34	"	"			
종로	138-2	"	25.3	장재근	마포구동교동 201-16	138-2	"	25.3	장재근	종로구관철동 18-8번지	근저당	신택은행	8,000,000
종로1가	16	"	53	"	"	16	"	53	"	"			
	9	"	24	안평순	종로구종로1가9	9	"	24	안평순	종로구종로1가9번지			
	10-1	"	34	박윤규	종로1가10번지	10-1	"	34	박윤규	종로1가10번지			
	10-2	"	20	김형자	서대문구북아현동 1-245	10-2	"	20	김형자	서대문구북아현동 1-245			
	"	"	10	박윤규	종로1가10번지	"	"	10	박윤규	종로1가10번지			
	15	"	3.6	김순열	종로구종로1가15	15	"	3.6	김순열	종로구종로1가15번지	근저당 가등기	조흥은행(임동우)	8,000,000
	1-1	"	6.1	차태식	성북구중암동 10-140	1-1	"	6.1	차태식	성북구중암동 10-140번지			
	6-1	"	4.4	이영호	종로구종로1가6	6-1	"	4.4	이영호	종로구종로1가6번지			

토 지 대 장					등 기 부 등 본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성 명 및 주 소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성 명 및 주 소	기 타 권 리	기 타 권 리 내 역	
	7-1	대	1.9	이말녀 종로구종로1가7-1	7-1	대	1.9	이말녀 종로구종로1가7-1번지			
	8-2	"	2.1	장옥삼 종로구종로1가8-2	8-2	"	2.1	장옥삼 종로구종로1가8-2번지			
	8	"	1.7	국 유	8	"	1.7	국 유			
	13	"	1.2	박근배 종로구청진동267	13	"	1.2	박근배 종로구청진동267번지			
	9-2	도로	43.3	서울시	9-2	도로	43.3	서울시			
	14-3	"			14-3	"					
세 총 토	108-1	"	89.3	"	108-1	"	89.3	"			
	129-1	"	37.3	"	129-1	"	37.3	"			
	131-1	"	4.7	"	131-1	"	4.7	"			
	2	"	26	박용태 종로구종로1가3	2	"	26	박용태 종로구종로1가3			
	3	"	108	"	3	"	108	"			
	3-1	"	2.6	"	3-1	"	2.6	"			
합 계			866.8				866.8				

◎ 서울특별시고시제 12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신설변경결정
및지적승인(지적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 같이 신설 변경및 기
적승인(지적변경승인)하고 도시지
획법제 12조및 제 13조와 건설부

시 제 41 호('77.3.16)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척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4.28
서울특별시장

○ 도로변경 및 지적승인(지적변경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별번호	특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중로	1	125	20	1,800	상암동 강변	난 지 도
변경	"	"	"	"	1,950	상암동경비(중2-104)	노선연장(150m)
신설	"	"	138	"	7,500	망월동	광로 24호 남지계방부분 370㎡지적승인
기정	대로	"	40	35	3,820	차선동(광장3호)	세브란스병원 (광로 40)
변경	"	"	"	"	"	"	대신동통계아트부근 360㎡구간복원축소
기정	"	2	50	30	3,120	왕십리광장	압구정동
변경	"	"	"	"	"	"	행당동, 용봉동 2개부 근 400㎡구간복원확장
기정	중로	2	21	15	1,150	이티원	보광동
변경	"	"	"	"	"	"	보광 80-9가각설치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변경
 폐지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 같이 신설, 일부변경
 폐지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
 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4.28

서울특별시 장

○ 결정(신설, 일부변경, 폐지)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1	10 ^m	50 ^m	당산동 2가 36-1	당산동 2가 36-1	
변경	"	"	"	"	"	"	노선 폐지
기정	"	2	8	120	당산동 2가 36-1	당산동 2가 47-3	
변경	"	"	"	"	"	"	노선 폐지
기정	"	"	"	100	문래동 3가 84-2	문래동 3가 84-1	
변경	"	"	"	"	"	"	노선 폐지
기정	"	4	4	60	양명동 5가 67	양명동 5가 69-2	
변경	"	3	6	25	"	"	위치 변경
기정	"	"	"	130	시흥동 218-25	시흥동 220-29	
변경	"	"	"	"	"	"	위치 변경
신설	"	"	"	90	봉천동 504-2	봉천동 501-6	

◎ 서울특별시고시제 1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폐지) 및 지적변경 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다음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1977.3.16)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시설변경(폐지) 및 지적변경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4. 28
 서울특별시장

○ 시설변경(폐지) 및 지적변경 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목원	연장	기정	총정	비고
기정 변경	중로	2		15	150	문래동3가 80	문래동3가 78	폐지(구외정리지구내도로)
기정 변경	대로	3	58	25	7,200	경릉동(대 3-54)	세검정(대 1-12)	세검정부근 100㎡ 구간지적변경
기정 변경	중로	2	55	15	2,000	보문동6가(중3-9)	혜화동로타리	창신아파트부근 50㎡ 구간 명신국교부근 230㎡ 구간지적변경
기정 변경			27	15	860	구서울상대(대 1-1)	중암동(중 3-12)	시정부근 80㎡ 구간 지적변경
기정 변경		3	9	12	1,650	창신동	신설동	침릉사부근 100㎡ 구간지적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31 호</p> <p>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일부변경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아동공 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 규정에</p>	<p>외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4. 2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공원결정 및 일부변경 조서

구분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비고
신설	청량아동공원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1	612	
·	옥수아동공원	성동구 옥수동 78 외 6필	3,212	
·	마장아동공원	성동구 마장동	952	
폐지	영등포 제1아동공원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7,447	

<p>◎ 서울특별시고시제 132 호</p> <p>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41 호</p>	<p>('77.3.16) 규정에 외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4. 29</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시설결정 (운동장)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운동장	강남구 도곡동 166-2 부근	7,394 ㎡ (2,237명)	

※별첨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90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제 25 호 (77.2.4) 로
고시된 남산관광도로 진입로개량공
사 구간내에 저속 편입되는 토지
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
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
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
자 이에 공고함.
- 2.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 3.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브이게 한다.

1977. 4. 25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 1. 사업장위치 : 용산구 한남동 산 10
의 194 ~ 한남동 산 10의 141
-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남산관광도로 진입로 개량공사
- 3. 사업의 규모
가. 차도육교 B = 7.3 m L = 295 m
도로확장 B = 42 m L = 580 m
-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1977.2.1 ~ 77.6.30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기조서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 성명 : 다음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평)	주소	성명
1	한남동	726-42	대	50	726-42	대	50	726-42	김규원
2	"	726-41	"	50	726-41	"	39	"	"
3	"	726-40	"	198	726-367	"	1.0	726-40	정문섭
4	"	726-3	"	200	726-3	"	65	이촌동 300-24	김충기
5	"	산10-24	임	8	산10-24	임	8		재단법인 약초관음회
6	"	산10-98	"	5.07	10-188	"	15	금산군 미원면 순원리 153	김철통
7	"	산10-130	"	3.08	10-130	"	94	해화동 22-37	김옥열
8	"	산10-129	"	43	10-129	"	43	순원리 153	김철통
9	"	산10-99	"	3.52	10-189	"	15	해화동 22-37	김옥열
10	"	산10-100	"	13.08	10-197	"	70		원불교
11	"	산10-107	"	2.20	10-191	"	6	후암동 55-15	김혜영
12	"	산10-104	"	1.24	10-190	"	23	관훈동 197-34	홍순덕
13	"	산10-132	"	44	10-132	"	44	"	"
14	"	산10-105	"	5	10-105	"	5	산 10	이경자
15	"	산10-133	"	48	10-133	"	48	"	"
16	"	726-62	대	46	726-372	대	25	"	"
17	"	726-92	"	9	726-92	"	9	"	"
18	"	726-93	"	282	726-374	"	216	충무로4가 125-1	코리아나 관광 Co
19	"	산10-87	임	12.01	산10-187	임	117	소공동 51	차준구
20	"	산10-134	"	95	10-134	"	15	"	"
21	"	산10-56	"	3.24	10-185	"	14	"	"
22	"	산10-57	"	65.03	10-186	"	48	"	"

순 위	소재지	분 할 전 표 시			분 (합 후 표 시 수 용 대 장)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23	한남동	722-3	대	1,204	722-17	대	213	학동 산 21	대한주택 공사
24	"	726-74	"	2,180	726-373	"	5		남산맨손
25	"	726-292	"	22	726-292	"	22	반포 274	홍 승 호
26	"	726-291	도	31	726-291	도	31	"	"
27	"	726-290	대	12	726-290	대	12	"	"
28	"	726-289	도	18	726-289	도	18	"	"
29	"	726-174	대	217	726-174	대	0.5	"	"
30	"	726-20	"	300	726-20	"	80	천연동 80-36	김 영 선
31	"	726-4	"	85	726-4	"	48	이태원 101	양 색 대
32	"	726-138	"	1,292	726-138	"	57	녹번동 86-30	한 시 대
33	"	726-5	"	353	726-5	"	170	"	"
34	"	726-288	"	36	726-369	"	32	"	시
35	"	726-236	도	93	726-236	도	93	"	시
36	"	산 10-137	임	22.25	산 10-194	임	196	"	국
37	"	" 10-128	"	14.10	" 10-128	"	178	"	국
38	"	" 10-25	"	4	" 10-25	"	4	"	국
39	"	" 10-131	"	7	" 10-131	"	7	"	시
40	"	726-22	대	47	726-22		23	"	시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3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
업체대체지정및지정취소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는 지정요령제 5 조 및 동 6 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대체지정 및 지정취소
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77. 4.

서울특별시

1. 대체지정업체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업 체 명	비이콘공업주식회사		비이콘시계공업주식회사		
대 표 자	이 호 진		과 동		
소 재 지	동대문구 중화동 110-10		.		
생 산 제 품	시 계		.		
지 정 번 호	306		.		
2. 지정취소업체조서					
지정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생 산 제 품	취 소 사 유
1204	미진산업사	박진환	강남구 봉납동 87	직조상표	이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사 령</div>			<p style="text-align: right;">성 동 구 김동훈 서 기 관</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1977년 4월 22일 대 통 령</p> <p>◎ 1977.4.21</p> <p style="text-align: right;">중 구 김상경 지방행정주사</p> <p>복직을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p> <p>◎ 1977.4.22</p> <p style="text-align: right;">도시가스사업소 신무균 지방서기관</p> <p>서기관에 임함. 도시가스사업소 도시가스과장에 보함.</p>		
			<p style="text-align: right;">도 봉 구 김용석 지방행정사무관</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2호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 style="text-align: right;">동 부 병 원 윤기정 지방행정서기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2 호 규정에 의거 전직에 처함.</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p>		